

	국제교류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1/4	관리 부서	국제교류 센터

제1조(목적)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국제교류센터는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재학생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의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의사소통능력을 익히기 위한 국제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협약기관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국제교류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범위) 국제교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교육 관련 사업 개발 및 운영
2. 국제교류 관련 사업 개발 및 운영
3. 글로벌 상담 운영
4. 기타 국제교류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센터장) ① 국제교류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본 국제교류센터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 및 업무담당직원) ① 국제교류센터 실무위원 및 업무담당직원을 둔다.

② 실무위원은 본 대학 전임 교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겸직할수 있다.

제5조(조직) 본 국제교류센터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국제교류센터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제교류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 업무담당직원으로 구성되며 국제 업무관련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전략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련 기획, 예산 및 결산 수립 및 조정

	국제교류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2/4	관리 부서	국제교류 센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안건 상정
3. 학생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운영
4. 기타 국제 업무 관련 안건 상정

④ 위원회 회의는 매달 1회 이상으로 업무 필요시 소집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업무담당직원은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재정) ① 국제교류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내지원금, 국고지원금, 산학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제교류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국제교류센터의 경비사용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센터장은 실무위원회의를 거쳐 국제교류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9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와 그 집행실적에 따른 예산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과 개정)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3/4	관리 부서	국제교류 센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3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8. 31.		
		페이지	4/4	관리 부서	국제교류 센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